

# 2024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시행 공고

## 하계 / 대한체육회

### 1. 검정개요

- 대상자격/종목: 전문(2급), 생활(1·2급),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 검정대상: 2024년도 전문(2급), 생활(1·2급),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합격자 및 필기시험 면제자
- 주요일정

구분	일시
실기구술시험 온라인 접수	2024.5.30.(목) 09:00 ~ 6.5.(수) 18:00
특별과정 자격요건 증빙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2024.5.30.(목) 09:00 ~ 6.5.(수) 18:00
응시수수료 납부	2024.5.30.(목) 09:00 ~ 6.5.(수) 23:30 ※ 23:30 또는 마감일 기준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수험표 출력	2024.6.7.(금) 14:00 ~ 7.5.(일) 18:00
실기구술시험	2024.6.8.(토) ~ 7.5.(금) ※ 세부일정은 종목별 시행 공고문 참고 (시험시작 시간 30분전 또는 공고문 등을 통해 시행단체가 사전 안내한 시간까지 시험장소 입실 및 대기)
최종 합격자 발표	2024.7.15.(월) 16:00

- 검정종목 : 70개 종목 \* 태권도(국기원), 동계(설상)종목 제외(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구분	종목(가나다순)
공통 (45)	검도,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자전거), 산악(등산), 세팍타크로,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스킨스쿠버), 스쿼시,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 테니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펜싱, 하키, 핸드볼
2급 전문(52)	(공통종목) + 가라테, 근대5종, 소프트볼, 역도, 주짓수, 컬링, 합합
1급·2급 생활 (63)	(공통종목) + 게이트볼, 국학기공, 라켓볼, 레크리에이션, 소프트볼, 오리엔티어링, 윈드서핑, 족구, 주짓수, 줄넘기, 치어리딩,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플로어볼, 합기도, 행글라이딩, 합합
유소년 (60)	(공통종목) + 게이트볼, 라켓볼, 레크리에이션, 오리엔티어링, 윈드서핑, 족구, 줄넘기,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합기도, 행글라이딩
노인 (58)	(공통종목) +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라켓볼, 레크리에이션, 오리엔티어링, 윈드서핑, 족구,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합기도, 행글라이딩

- 응시 수수료: 30,000원/1인
  - 시설입장료 및 장비대여료 등 실비는 종목별 특성에 따라 응시생이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종목별 세부시행공고 확인
- 심사항목: 첨부 - 종목별 세부시행공고 확인
- 합격기준: 실기,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합격자 발표: 체육지도자 홈페이지(<https://sqms.kspo.or.kr>) → 합격성적 조회
- 자격검정기관: (주최)대한체육회 / (주관)종목별 주관단체

## 2

## 실기구술시험 원서접수

## □ 응시자격요건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구 분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 2024년 3월 25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일반과정	<p>① 2024년 3월 2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p> <p>② 2024년 3월 25일 현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1) ~ 3)번 중 해당)</p> <p>1) 체육 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p> <p>2) 체육 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졸업예정자 포함)</p> <p>3) 체육 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p> <p>③ 2024년 3월 25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1) ~ 3)번 중 해당)</p> <p>1) 체육 분야 학사</p> <p>2) 체육 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p> <p>3) 체육 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p>
특별과정	<p>④ 2024년 6월 5일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p> <p>⑤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p> <p>⑥ 2024년 6월 5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p>
추가취득	⑦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 분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 2024년 3월 18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일반과정	① 2024년 3월 18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특별과정	② 2024년 6월 5일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④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⑤ 2024년 6월 5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추가취득	⑥ 2024년 6월 5일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 분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일반과정)	○ 2024년 4월 1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특별과정	①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③ 2024년 6월 5일 현재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추가취득	④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 분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일반과정)	○ 2024년 4월 1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특별과정	① 2024년 6월 5일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 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③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생활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④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추가취득	⑤ 2024년 6월 5일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노인스포츠지도사

구 분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일반과정)	○ 2024년 4월 1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특별과정	①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②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생활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③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추가취득	④ 2024년 6월 5일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 분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 2024년 6월 5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일반과정	① 2024년 3월 18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특별과정	② 2024년 6월 5일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종목의 3년 이상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 분	응시자격 요건
공통사항 (일반과정)	○ 2024년 4월 1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특별과정	① 2024년 6월 5일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 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③ (특례)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024년 6월 5일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적용시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④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생활 또는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2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추가취득	⑤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접수기간: **2024.5.30.(목) 09:00 ~ 6.5.(수) 18:00**

※ **접수 후 응시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접수 익일 23:30분 또는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응시수수료 미납 시 접수 내역이 자동 취소됩니다.**

□ **접수방법: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https://sqms.kspo.or.kr)**

○ **지원서 작성**

- 접수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원서접수(실기구술시험) 클릭 → 접수신청 →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및 증명사진 파일 등록 → 자격등급, 응시과정, 종목 등 선택 → 고사장 선택 → 원서접수 → 원서접수 내역 상세조회
- 해당 응시요건 체크(해당사항 체크), 증명사진 파일 첨부, 핸드폰번호 입력(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 **연락 가능한 핸드폰 번호 필히 입력**(잘못된 번호 입력으로 인해 제출서류 보완 등 각종 안내 수신 불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일부 특별과정의 경우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특별과정: 원서접수 → 서류제출·심사 합격 → 검정료 납부)  
※ **일반과정 및 추가취득의 경우 원서 접수 후 응시수수료 납부를 완료하면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증명사진 파일 첨부**

- 증명사진(6개월 이내 촬영)은 파일(bmp, gif, png, jpg파일 모두 가능)로 첨부
  - 사진은 최종 합격 후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인쇄되오니 반드시 증명사진(3×4)으로 첨부 요망
  - 흑백사진, 측면사진, 배경이 나타나는 사진, 모자착용 사진, 기타 얼굴 인식이 안 되는 사진 등 불가
- 파일 첨부 및 등록버튼 클릭 후 접수확인 화면에서 사진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 다시 첨부해야 하며, 접수기간 중 '마이페이지-회원정보관리-증명사진'에서 수정 가능

○ **개명신고: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가입 이후 개명한 이는 해당 시험 접수 전 아래의 방법에 따라 반드시 개명 신고 후 접수 및 응시 바랍니다.**

※ **수험표 발급일부터 전체 시험 종료일까지 개명 신고 불가**

- 개명신고 방법: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명신고 → 개명신고하기 → 실명인증 → 신고 내용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승인 후 개명처리 완료
- 또한 서류심사 대상자의 경우 홈페이지 개명 신고 후 서류제출 시, 제출하는 서류가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반드시 개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함께 제출해야 심사 가능(미제출시 미접수자로 분류되어 응시 불가할 수 있음)

□ **접수마감: 시험장별 선착순 접수마감**

○ **시험장이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접수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추가 시험장 개설 필요 시, 각 종목단체에서 공지 예정(\*미공지 시 추가 개설 없음)

○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고사장 변경이 불가하며, 접수기간 내(5.30.~6.5.)에 고사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서접수 취소 후 신규 원서 접수를 통해 고사장 변경가능**

○ 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발생 시 일부 시험장이 폐쇄될 수 있으며, 시험장 변경 및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마감일(6.5.) 18시부터는 온라인 접수 취소 후 재 접수 불가)

### 3

## 응시자격요건 서류제출(특별과정 해당자에 한함)

- 제출대상: **특별과정 원서접수자**
  - 특별과정: 학교체육교사(2급 전문, 1급 생활, 유소년, 2급 장애인), 국가대표선수(2급 전문, 2급 장애인), 프로스포츠선수 전형(2급 전문, 1급 생활)에 한해 응시자격요건 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필수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체크한 **응시자격요건** 관련 제반 증빙서류는 1인 1등기 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운영기관의 재량에 따라 방문제출을 허용할 경우 해당 종목 시행기관의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팩스·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기간: 2024.5.30.(목) 09:00 ~ 6.5.(수) 18:00까지(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종목별 검정 시행기관(종목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하며, 제출처 착오 등으로 인한 서류 미 도달 및 응시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서류심사 기간 이후 응시자격요건 변경 불가
- 서류심사 결과(합격 및 불합격 사유) 확인방법: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 실기구술시험 → '해당 스포츠지도사' 비고란 '상세조회' 클릭 → '서류심사' 항목에서 확인가능
  - 응시자격요건별 제출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만 인정(단,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은 사본 가능)**
    - \* 제출서류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전자발급증명서: 증명서 QR코드 조회, 유효한 원본인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인정

☞ 수기발급증명서: 기관 및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에 한해 인정(발급자 연락처 필수)

- 원칙적으로 수기발급 증명서(공문 등)는 기관 및 대표자의 직인이 수기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발급기관 담당자로부터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아 제출(담당자 연락처 명기)
- 전자직인 등 온라인 발급 문서의 경우 원본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소속,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함

★서류제출 유의사항★

-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자격검정일로부터 3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 홈페이지 확인 방법 》

- 인정요건 등: 홈페이지 → 시험안내 → 자격제도안내 → 해당 스포츠지도사
- 양식: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자료실 → 서식자료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서류심사 대상자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일반과정	① 2024년 3월 29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 이상)	○	○	○	○
	② 2024년 3월 29일 현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음 ①~③번 중 해당 서류 제출 ①체육 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	○	○	○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p>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①~③번 중 해당)</p> <p>① 체육 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p> <p>② 체육 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졸업예정자 포함)</p> <p>③ 체육 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p>	<p>②체육 분야 전문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p> <p>③체육 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p>				
	<p>③ 2024년 3월 29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①~③번 중 해당)</p> <p>① 체육 분야 학사</p> <p>② 체육 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p> <p>③ 체육 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p>	<p>다음 ①~③번 중 어느 하나 제출</p> <p>①외국학교 체육 분야 학사 졸업증명서</p> <p>②외국학교 체육 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경기실적 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 이상)</p> <p>③외국학교 체육 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p>	○	○	○	○
특별과정	<p>④ 2024년 6월 5일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p>	<p>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 과목 자격증 사본, 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p>	면제	○	○	면제 * 폭력 예방 교육 (3)
	<p>⑤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p>	<p>국가대표선수 확인서,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p>	면제	면제	○	면제 * 폭력 예방 교육 (3)
	<p>⑥ 2024년 6월 5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p>	<p>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발급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p>	면제	면제	○	○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추가 취득	⑦ 2024년 2월 7일 현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	○	면제 * 폭력 예방 교육 (3)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일반 과정	① 2024년 3월 18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첨부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종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고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 종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	○	○
특별 과정	② 2024년 6월 5일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학교장 발급 경기 지도경력증명서 (3년 이상)	면제	○	○	○
	③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면제	○	면제 * 폭력 예방 교육 (3)
	④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	면제	○	○
	⑤ 2024년 6월 5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 경력 3년 이상일 것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발급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 이상)	면제	면제	○	○
추가 취득	⑥ 2024년 6월 5일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	○	면제 * 폭력 예방 교육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3)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서류심사 해당사항 없음)**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일반과정	① 2024년 4월 1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없음	○	○	○	○
특별과정	②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면제	○	○
	③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	○	○
	④ 2024년 6월 5일 현재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	○	면제 * 폭력 예방 교육 (3)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일반과정	① 2024년 3월 29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없음	○	○	○	○
특별과정	② 2024년 6월 5일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학교장 발급 경기 지도경력증명서 (3년 이상)	면제	○	○	○
	③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면제	○	○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사람					
	④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생활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⑤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	○	○
추가 취득	⑥ 2024년 6월 5일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	○	면제 * 폭력 예방 교육 (3)

- 노인스포츠지도사(서류심사 해당사항 없음)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일반 과정	① 2024년 3월 29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없음	○	○	○	○
특별 과정	② 2024년 6월 5일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면제	○	○
	③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생활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④ 2024년 6월 5일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	○	○
추가 취득	⑤ 2024년 2월 7일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	○	○	면제 * 폭력 예방 교육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3)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일반 과정	① 2024년 3월 18일 현재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첨부 서식), 사업지등록증 사본(해당 종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신고증명서 추가제출), 해당 종목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	○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일반 과정	① 2024년 3월 29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없음	○	○	○	○
특별 과정	② 2024년 6월 5일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증 사본,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첨부 서식)	면제	○	○	○
	③ 2024년 6월 5일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확인서	면제	면제	○	○
	④ 2024년 6월 5일 2급 생활 또는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 (1) * 특수체육론	○	○	○
	⑤ (특례) '08년부터 '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024년 6월 5일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08년 ~ '11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실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 수료확인서/ 공문(대한장애인체	면제	면제	○	면제

구분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인정요건)	취득절차			
			필기	실기	구술	연수
	해당 자격종목의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적용시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육회 발행) 및 장애인대상 지도 경력 증명서(2년 이상, 첨부7서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추가 취득	⑥ 2024년 6월 5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없음(시스템 연동)	면제	○	○	면제 * 폭력 예방 교육 (3)

- 경력증명서 인정범위

<b>&lt;경력증명서 인정범위&gt;</b>		
<input type="checkbox"/> 해당 종목: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단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input type="checkbox"/> 종류 및 발행 기관		
구분	내용	발행 기관 인정 범위
경기 경력	선수 활동 경력 (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 단체(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경기지도 경력	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학교 및 직장*(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 가입된 운동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경기지도 경력 (장애인선수 대상 지도)	장애인선수 지도 경력 (코치, 감독)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17개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또는 학교 및 직장(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가입된 운동부)
지도 경력	선수 또는 일반인 지도 경력	체육시설 또는 학교 및 직장*(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 가입된 운동부)
지도 경력 (장애인 또는 장애인선수 대상 지도)	장애인 또는 장애인선수 지도경력	체육시설 또는 학교 및 직장(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미가입시 불인정)
국가대표선수	국제대회 참가 경력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장애인국제대회 참가경력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학교체육교사	학교체육교사로서 활동한 경기지도 또는 지도경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체육교사 (장애인 대상 지도)	(특수)학교 (특수)체육교사로서 활동한 지도 경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프로스포츠선수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경기지도경력 발행기관에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포함 인정

▲ 직장 → 체육지도자로서 고용된 직장을 의미함(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미 가입 시 불인정)

- 경기지도경력: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운동경기부 지도 경력 등을 의미함

- 지도경력: 경기지도경력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직장인 대상의 체육활동 지도·육성 경력 등을 의미함

\*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 근거를 증빙하는 자료를 붙여 '서식 8'의 공공체육시설 확인서를 해당 시설(운영기관)로부터 발급받아 심사 기관에 제출

\* 경기실적: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한 실적(입상여부와 무관)을 의미하며, 대회참가확인서 또는 경기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실적에 한해 인정

- ex) 1년(1.1~12.31)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

- ex)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 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준회원 또는 인정단체 포함)의 직인 날인 필요(준회원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

#### □ 학위증명서 인정범위

○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 대체 서류로 제출 가능(졸업예정 관련 '24년도에 발급받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 학년 재학증명서 제출자는 졸업(학위)증명서 제출(2025.2.28.까지)시 자격증 인정·발급)

- 졸업예정자란 초·중·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 국가대표선수 및 체육 분야 인정범위

○ 국가대표선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회원(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 청소년(주니어)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상비군) 불인정

○ 체육 분야 또는 체육관련 학과: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경기지도,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이외의 경우 대학 알리미 'academyinfo.go.kr'를 참고하여 판단)

#### □ 기타 서류심사 관련(기준일 및 첨부서류 등)

○ 경력 및 자격, 학위,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하며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 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동일 기간 복수의 기관(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기)지도경력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학력과 경기경력의 합산을 요구하는 응시요건(2급 전문)에도 이를 적용함
-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경기지도) 경력 인정
- 허위 서류 제출 시 발급기관 및 서류 제출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 조치 가능
- 서류 심사 과정에서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증빙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음.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기한 내 진위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 제출서류 보관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폐기

□ **프로스포츠단체** ('15.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구분	축 구	야 구	농 구		배 구	골 프	
지정 단체	(사)한국프로 축구연맹 [K League]	(사)한국야구 위원회 [KBO]	(사)한국 농구연맹 [KBL]	(사)한국여자농구연맹 [WKBL]	(사)한국 배구연맹 [KOVO]	(사)한국 프로골프협회 [KPGA]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

- \*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은 1시즌을 1년으로 인정(종료된 시즌만 인정)
- \* 제출서류 보관기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폐기

## 4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기간: 2024.5.30(목) ~ 6.5(수) 23:30 또는 납부마감일 기준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전까지
  - ※ 마감시일은 결제대행 서비스 혼잡이 예상되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수수료 납부 → '해당 스포츠지도사' 비고란 결제하기 클릭 → 납부방법 선택 및 결제
  - 결제방법: 계좌이체, 가상계좌, 카드결제(계좌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응시수수료 미납 시 실기구술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며 이후 추가 접수 및 납부기간 없음
    - ※ 응시수수료는 온라인 접수 익일 23:30분까지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 접수가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 단 서류심사를 진행하는 자격등급의 경우 공고 상 검정료 납부기간 마감일 23:30분 내 납부
    - ※ 가상계좌 입금 시 일부 노후화된 ATM 기기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 창구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 가상계좌 입금 시 반드시 본인의 응시수수료만 입금하셔야 하며, 타인의 응시수수료를 함께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
- 응시수수료: 30,000원
- 환불규정
  - 납부 기간 내 취소·환불요청 시 전액 환불
  - 납부마감일로부터 종목별 실기구술검정 최초 시작일 10일전까지 취소·환불요청 시 환불수수료 5천원을 제외한 금액 환불 \* 환불시기: 검정 종료 후 2주 이내 입금(환불) 예정
  - 종목별 최초 시험 시작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 취소환불 요청을 의미함(종목별 시험일정 사전 확인 필수)

- 환불신청방법
  - **검정료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수수료 납부 → 비고란의 환불신청 버튼 클릭(계좌이체,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환불받을 계좌 입력 필요)
  - **납부마감일 익일부터 실기구술시험 최초 검정일까지:** 환불서류를 작성 및 시험 접수증 출력(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 실기구술시험 접수 내역 란의 비고 → 상세조회)하여 종목 단체에 제출 \* 제출서류 상세 하단 표 참고
  - \* 납부마감일 익일부터 실기구술시험 최초 검정일까지는 각 자격검정기관(종목단체)에서 환불접수 및 환불 시행
-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금액, 적용기간 등 환불기준 협의하여 승인이후 환불시행

- ※ 가족의 사망 등 발생 시 응시수수료 환불
- 검정기관이 지정한 가족의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의 (외)조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에 한함) 또는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응시 불가 시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응시제한으로 당해 상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결정
  - 입증서류는 실기구술시험일(시험일 포함) 기준 30일(18시까지)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 공통: 환불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 본인신분증 사본, 실기구술시험 접수확인증(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실기구술시험 → 비고 → 상세조회 → 접수증 출력 )
    - 가족 사망 시(시험일 7일전~시험일): 본인과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및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입원기간 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해당 사유와 관련하여 검정기관이 지정하는 증빙서류 (코로나19로 인한 응시 제한자: 감염(격리)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실기구술시험 접수확인서)
  - \* 제출처: 종목별 실기구술시험 시행기관(홈페이지 → 시험안내 → 자격검정·주관단체)

## 5 실기구술시험 시행

- 일시 및 장소: 종목별 세부 시행계획 참조
  - ※ 세부 시간 및 장소는 지원인원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수험번호 부여 및 시험 진행
  - ※ 과정별(일반, 추가, 특별) 시험 진행 순서가 상이함(해당 검정기관에 문의)
- 심사항목 및 시험절차
  - 첨부 「종목별 실기·구술 세부시행계획」 참조
  - 심사항목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격검정기관(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문의
- 기타사항
  - 영상은 시험 모니터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녹화하는 것으로 **응시생 열람 및 제공 불가**
  - 기타 문제지, 채점지 등 **시험관련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취급·관리**
  -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당일 시험이 종료되기 전까지 주관단체에 이의신청**

## 6

## 합격자 발표

- 합격기준: 실기, 구술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자
- 합격자 발표: 2024. 7. 15.(월) 16:00
- 기타사항
  - 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발표일 포함, 18시까지) ①점수 산출과정 중 전산오류 ②합격 여부에 대한 오류 ③불합격 사유에 대한 확인요청 가능 ④세부 항목별 평균점수
  - 채점관련 질의서 접수 및 결과 확인(질의서 작성: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실기구술채점질의 → 채점질의서 작성 및 등록/ 답변서 확인: 각 단체별 답안 작성 → 마이페이지 → 실기구술채점질의 내역 → 답변서 확인)
  - ※ 해당사항은 각 자격검정기관에서 운영하며, 질의서 접수기간 내 접수된 답변에 한하여 답변
  - ※ 채점관련 질의서는 단순 확인용이며, 재 채점 요청 불가함
  - ※ 채점질의 항목 외의 시험관련 정보는 관련 법령 비공개 정보이므로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시험위원 명단, 문제지, 채점지, 시험영상, 제3자의 시험 정보 등

## 7

## 유의사항

- 실기구술 시험 시 필수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기타 종목별 필수 지참물(종목별 시행계획 참조)
  - 수험표 출력: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수험표 출력 ('24.6.7.(금) 14시부터 출력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확인서), 운전면허증(경찰청장 발급), 여권<sup>※2</sup>(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유효기간 내), 모바일 신분증<sup>※3</sup>, 체육지도자 자격증<sup>※4</sup> 중 택 1
  - ※1 위 신분증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수험표 등 필수 준비물 미 지참자는 응시 불가  
\* 본인 얼굴 사진이 아니거나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2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반드시 신여권과 함께 지참하여야 신분증으로 효력을 인정
  - ※3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캡처본은 불인정. 신분확인 시 해당 앱 작동단계부터 확인하며 실시간 전송받은 신분증만 인정
  - ※4 정식 발급(출력)된 자격증과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또는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모바일 자격증)에 한함(캡처본 불인정)  
\* 모든 신분증은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하며, 신분증의 사본은 불인정함
- 응시자 유의사항
  - **자격검정기관 담당·유관부서(전 종목) 및 실기구술 주관단체 임·직원(소속 종목)은 응시가 제한됩니다**(담당·유관부서 이동 및 퇴사자도 해당일자로부터 1년간 응시 제한).
  -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변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종목별 집결장소

**에 시험시작 시간 30분 전 또는 검정기관이 공지한 시간까지 해당 종목의 실기용품을 소지하고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은 시험의 시작~종료까지이며 시험장 입·퇴실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시험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 인원이 많거나 검정 시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험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응시자에게 사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검정료 외에 추가비용(장비사용료, 시설사용료 등)은 현장에서 납부합니다.
- 결시 또는 중도 포기한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원서 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원활한 검정운영을 위해 협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 또는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검정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종목별 세부계획 및 검정 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에 대한 응시 편의제공**

- 본 응시를 위해 장애인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 원서 접수 시 장애사항 및 장애요청 사항을 선택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홈페이지 → 로그인 → 원서접수(실기·구술시험) 클릭 → 접수신청 → 신청자 개인정보 입력 및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편의지원 항목 선택 → 자격등급 및 응시과정 등 선택 → 고사장 선택 → 원서접수내역 조회 → 상세조회 → 장애증빙서류 '파일선택' 클릭 → 관련 서류 업로드 또는 제출처 주소 확인 및 등기우편 발송
- 제출방법: 홈페이지 내 등록 또는 방문, 등기우편 제출(팩스/ 이메일 제출 불가)
- 제출기한: 2024.5.30.(목) ~ 6.5.(수)18:00까지(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신관 1층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육성부 (☎ 02-3434-4595)
- 제출서류
  - 공 통: 편의제공 신청서(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 )
  - 대상별: 해당 제출서류

대 상	제출 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의사진단(소견)서 1부(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의사진단(소견)서 1부(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위와 동등한 장애가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포함)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원본 1부

○ 편의제공 내용

장애유형	편의제공 내용
뇌병변, 지체장애	이동보조, 현장안내
시각장애	이동보조, 현장안내
청각장애	이동보조, 현장안내, 수화통역사 지원
기 타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 등의 처리

- 부정행위를 한 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그 검정을 중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따라 향후 3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리시험자와 해당 응시자는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 기준

1.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시험문제 및 답안을 알려주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변하는 행위
6.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7.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을 알려줄 것을 강요하는 등 폭력으로 다른 응시생을 위협하는 행위
8. 응시자가 시험(대기)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기타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태블릿 PC, 녹음기 등]를 사용하는 등의 일체 행위
9.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0. 고사본부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1.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2. 그 밖에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 관련

-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시험중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가능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험당일 인정 신분증과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응시자가 시험(대기)시간 중에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기타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태블릿PC, 녹음기 등]을 휴대하는 등의 일체 행위(전자알림음 또는 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 포함)
6.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7. 시험 종료 안내 후 답안을 제시하는 행위
8. 기타 감독지시 불이행, 지침위반 등으로 퇴장시킬 필요가 인정되는 행위

□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의 부정행위 처리

- 관련 법령에 따라 해촉 또는 향후 시험 위촉 제한 등의 조치 예정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의거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자는 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이 취소되며 검정료 환불은 불가합니다.

□ 검정시행 기관 연락처

- 자격검정 관련 세부사항은 종목별 주관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목별 세부시행계획 참조